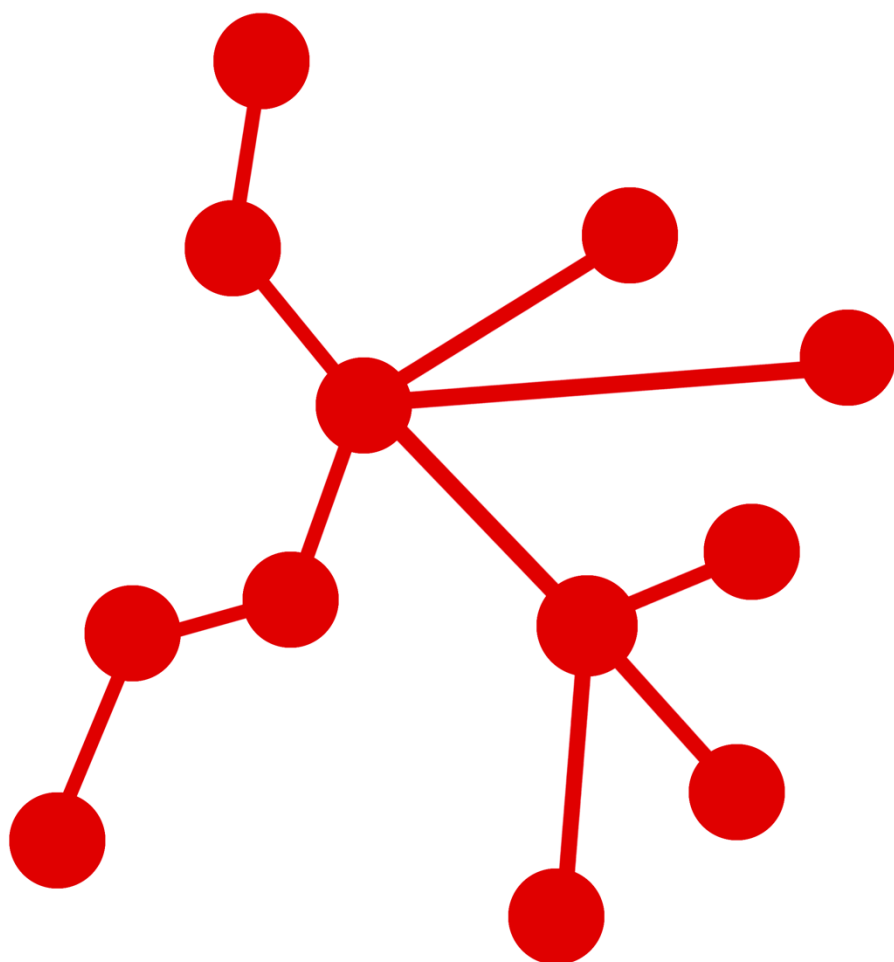




전국 한의과대학/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

전한대회세척
[신설 2022.06.27.]

제 1 조(목적) 본 세칙은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대표자회의(이하 전한대회이라 한다)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전한대회가 민주적인 학생단체로 활동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대의원) ① 전한대회 대의원은 자신의 당선이 확정된 즉시 자신의 당선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문서를 전한대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대의원 또는 참관 대의원은 전한대회와 관련된 분야의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.

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, 전한대회와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의 영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할 예정인 대의원은 해당 사실을 당선 즉시 전한대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 전한대회는 통지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대의원의 영리활동이 전한대회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판단한다.

④ 제 2 항과 제 3 항에 따라 전한대회와 관련된 분야의 영리활동을 대의원이 하고 있다고 전한대회에서 판단하였을 경우, 해당 대의원은 임기개시 3 개월 이내에 해당 영리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여야 한다.

⑤ 제 4 항의 대의원이 3 개월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영리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지 아니한 경우, 해당 대의원은 영리업무를 지속하고 있는 근거를 문서의 형식으로 제시하여야 한다. 전한대회는 해당 문서를 바탕으로 대의원의 자격 박탈 여부를 심사한다.

⑥ 전한대회는 제 3 항과 제 5 항에 따른 판단을 회칙해석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
제 3 조(개회) 전한대회 회의는 오후 7 시에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의장은 대의원과 협의하여 개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 4 조(폐회)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 의장은 폐회(또는 산회)를 선포한다.

② 폐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회할 수 없다. 단, 내우·외환·천재·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·경제상의 위기, 전한대회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사태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로써 의장이 대의원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 5 조(회의의 공개) ① 전한대회는 본 회의 회원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, 의장은 대의원 전원의 동의로 전한대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.

제 6 조(의사일정의 작성) ① 의장은 전한대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목록을 그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

② 의장은 전한대회 회의의 개의 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전한대회 회의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기재한 회기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.

③ 제 2 항에 따른 의사일정 중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중앙집행위원회와 협의하되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
④ 의장은 제 2 항과 제 3 항에 따라 작성한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대의원에게 통지하고 온라인상의 공간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.

⑤ 의장은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될 때에 회의의 일시만을 대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.

제 7 조(의사일정의 변경) ① 의장은 대의원 3 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를 통한 의결의 경우, 또는 의장이 각 대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는 인정한 경우,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.

제 8 조(의사일정의 미료안건)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.

제 9 조(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) ① 대의원은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.

② 안건을 상정하는 대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2 명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대의원이 예산 또는 자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안건을 상정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중앙집행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안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. 중앙집행위원회는 이에 더해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0 조(안건의 회부) ①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전한대회 의결을 통하여 특별위원회(본 세칙에서 밝히는 특별위원회는 전한대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한정한다)에 안건을 회부할 수 있다.

② 제 1 항에 따라 안건을 회부할 때에는, 회부하는 안건이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 적합한지를 전한대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.

제 11 조(심사기간)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.

1. 천재지변의 경우

2. 본 회의 안위에 직결되는 비상사태의 경우

3. 의장이 각 대의원과 협의하는 경우

② 특별위원회가 의장이 지정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, 특별위원회는 의장에게 회부된 안건에 대한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.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해당 안건을 다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전한대회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.

제 12 조(특별위원회에서 폐기한 안건) ① 특별위원회에서 전한대회 회의에 상정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안건은 전한대회에 상정하지 아니한다.

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, 전한대회 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한다는 특별위원회의 보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대의원 5 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안건을 전한대회에 상정하여야 한다.

③ 제 2 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, 제 1 항에 따라 상정되지 아니한 안건은 폐기된다.

제 13 조(위원회 재회부 금지)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. 단, 의장은 각 대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다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제 14 조(동의) 본 세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, 동의는 동의자와 1 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.

제 15 조(안건과 동의를 철회) ① 대의원은 그가 상정한 안건 또는 동의한 의제를 철회할 수 있다. 단, 2 명 이상의 대의원이 공동으로 상정한 안건 또는 동의한 의제에 대하여서는 해당 대의원 1/2 이상의 철회 의사를 통하여서만 철회할 수 있다.

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대의원이 전한대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 또는 동의한 의제를 철회할 때에는 해당 전한대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.

③ 중앙집행위원회가 전한대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된, 중앙집행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때에는 해당 전한대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.

제 16 조(재상정 불가) 한 번 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에 다시 상정하지 못한다.

제 17 조(안건의 설명) ① 전한대회 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, 안건의 발의인 또는 의장의 회부로 안건을 심의한 특별위원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.

② 전한대회는 제 1 항에 따라 설명을 들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의결을 통하여 해당 안건을 특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제 18 조(안건의 수정) ① 안건에 대한 수정은 수정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대의원 2 명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, 안건에 대한 예산안 수정은 수정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대의원 10 명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특별위원회는 안건을 수정할 수 없다. 단, 안건의 수정을 요청하는 단서를 붙여 이를 전한대회에 보고 할 수 있다.

제 19 조(수정안의 표결 순서) ① 동일한 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,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결정한다.

1.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.

2. 원안과 차이가 큰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.

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경우에는 원안을 표결한다.

제 20 조(안건의 정리) 전한대회는 안건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·자구·숫자 및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
제 21 조(발언의 허가) ① 대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대의원은 통지를 한 대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.

③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,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,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.

제 22 조(발언의 계속)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대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, 폐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.

제 23 조(보충보고) 의장은 대의원, 대의원이 지명한 소수의견자 또는 특별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대의원 또는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.

제 24 조(의제외 발언의 금지) 모든 발언은 의제, 의제에 미치는(及) 발언, 또는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 25 조(발언 횟수의 제한) 대의원은 동일한 의제에 대하여 2 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. 그러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특별위원장·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 및 의장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 26 조(발언의 원칙) 집행기구에 대한 질문 외에 대의원의 발언 시간은 15 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장이 정한다.

제 27 조(토론의 통지) ① 의사 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대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- ② 의장은 제 1 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와 그 소속을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한다.
- ③ 발언은 반대자부터 시작한다.
- ④ 제 1 항에 따른 통지가 없을 경우,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. 단, 본 회칙 제 72 조 제 6 항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 28 조(의장의 토론 참가)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,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.

- ② 제 1 항에 따른 의장석의 궐위는 의장의 사고(事故)로 본다. 이때 의장의 대리는 부의장이 맡으며, 부의장 또한 궐위인 경우에는 제 17 조 제 3 항 각 호의 순서로 의장직을 부여한다.

제 29 조(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)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, 의장은 종결을 선포한다.

- ② 전한대회 의결을 통하여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. 단, 질의 또는 토론에 참가한 대의원은 질의나 토론에 종결에서 재적인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③ 제 2 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.

제 30 조(표결의 선포)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.

-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그 누구도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.

제 31 조(표결 참여) ①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대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. 그러나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를 통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을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.

- ② 대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.

제 32 조(표결 결과의 선포)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이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.

제 33 조(재량투표) 대의원은 특정 단체나 이익 집단, 당국의 의사에 기속(羈束)되지 아니하며, 본인이 대표하는 학생들의 뜻을 대변하여 재량(裁量) 투표한다.

제 34 조(회의록) ① 전한대회 회의의 회의록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.

1. 개회, 회의 중지와 폐회의 일시
 2. 의사일정
 3. 출석 대의원의 수 및 성명
 4. 안건의 발의·제출·회부·송달과 철회에 관한 사항
 5. 출석한 참관 대의원의 수 및 성명
 6. 상정된 안건과 내용
 7. 의장의 보고
 8. 특별위원회의 보고
 9. 발언 내용
 10. 표결수
 11. 기명·전자·호명 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
 12. 대의원의 발언 보충
 13. 서면 질의와 답변
 14. 집행기구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결과처리보고서
 15. 기타 전한대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전한대회 회의의 모든 절차는 속기한다.

- ③ 회의록은 의장, 의장 대리, 회장 또는 그에 준하는 사람이 서명·날인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 보존한다.
- ④ 회의록의 서식은 「사무처리세칙」을 따른다.

제 35 조(참고자료의 게재) 대의원이 발언에 참고되는 간단한 문서를 회의록에 게재하려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 36 조(회의록의 수정) ① 발언한 대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자정까지 해당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 단, 해당 정정은 발언의 취지나 의도를 왜곡하여서는 아니된다.

- ② 발언한 참관 대의원의 자구 정정도 제 1 항을 따른다.
- ③ 속기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 또는 변경될 수 없다. 대의원 또는 참관 대의원이 회의 중 발언을 통하여 발언의 정정 또는 취소를 한 경우에는 해당 발언까지 회의록에 기재한다.
- ④ 대의원이 회의록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전한대회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

제 37 조(회의록의 배부 및 반포) ① 회의록은 대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반포한다. 단,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본 회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발언자 또는 각 대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- ② 제 1 항에 따라 비밀 처리된 회의록이라 하더라도 본 회의 회원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, 의장은 본 회의 회원에게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. 단, 이때 회의록은 서면을 직접 보게 하는 방법으로만 열람이 가능하다. 본 회의 회원은 서면을 촬영하거나 복사·스캔 또는 암송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③ 제 1 항에 따라 비밀 처리된 회의록이라 하더라도 대의원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, 의장은 대의원에게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. 대의원은 해당 회의록을 복사할 수 있으나, 타인에게 회의록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④ 비밀 처리된 회의록의 내용은 공표되지 아니한다. 단, 전한대회 의결 또는 의장의 판단으로 제 1 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표할 수 있다.
- ⑤ 회의록에 대한 기타 사항은 의장이 결정한다.

제 38 조(중앙집행위원회에 대한 서면 질문) ① 대의원이 중앙집행위원회에 서면으로 질문하려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제 1 항의 질문서는 「사무처리세칙」을 따른다.
- ③ 의장은 제 1 항에 따른 질문서를 지체 없이 중앙집행위원회에 전송한다.
- ④ 중앙집행위원회는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답변서를 통하여 이를 답하여야 한다.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답변 가능 기한을 전한대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
- ⑤ 제 4 항의 답변서는 「사무처리세칙」을 따른다.
- ⑥ 제 4 항의 답변서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대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.

제 39 조(중앙집행위원회에 대한 구두 질문) ① 전한대회 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집행 업무 전반 또는 집행 업무 일부를 대상으로 구두 질문을 할 수 있다. 중앙집행위원회는 이에 구두로 답변하여야 한다.

- ② 구두 질문의 시간은 20 분을 초과할 수 없으나, 중앙집행위원회의 구두 답변 시간은 질문 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- ③ 구두 질문과 구두 답변의 형식은 일문일답으로 한다.

- ④ 의제별로 질문하는 대의원의 수는 의장과 회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⑤ 의장은 질문 대의원의 수를 학교별로 차별 없이 배정한다.
- ⑥ 의장은 대의원의 구두 질문과 중앙집행위원회의 구두 답변이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하여야 한다.
- ⑦ 구두 질문을 하고자 하는 대의원은 집행 업무 전반 또는 특정 집행 업무의 어떤 부분을 질문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밝힌 구두질문요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제 1 항에 따른 구두 질문 기간을 부여 받을 수 있다.
- ⑧ 제 7 항에 따른 구두질문요청서가 제출된 경우, 의장은 요청서의 내용에 따라 회기 중 질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

⑨ 제 7 항에 따른 구두질문요청서는 개회일 3 일 전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의장은 구두질문요청서가 제출된 즉시 이를 중앙집행위원회에 전송하여야 한다. 단, 중앙집행위원회가 본 회칙 제 69 조를 위반하여 예산안 및 결산안이 일주일 전까지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, 중앙집행위원회가 예산안, 결산안 및 보고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간만큼 구두질문요청서의 제출 기한을 연장한다.

제 40 조(중앙집행위원회에 대한 현안 질문) ① 전한대회 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집행 업무와 관련이 있지 아니하지만, 본 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현안 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견을 구해야 하는 현안에 대한 구두 질문을 할 수 있다. 중앙집행위원회는 이에 구두로 답변하여야 한다.

② 현안 질문의 시간은 10 분을 초과할 수 없으나, 중앙집행위원회의 구두 답변 시간은 질문 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
③ 구두 질문과 구두 답변의 형식은 일문일답으로 한다.

④ 의제별로 질문하는 대의원의 수는 의장과 회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
⑤ 의장은 대의원의 구두 질문과 중앙집행위원회의 구두 답변이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하여야 한다.

⑥ 현안 질문을 하고자 하는 대의원은 현안 중 어떤 부분을 질문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밝힌 현안질문요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제 1 항에 따른 현안 질문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.

⑦ 제 6 항에 따른 현안질문요청서가 제출된 경우, 의장은 요청서의 내용에 따라 회기 중 질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

⑧ 제 6 항에 따른 현안질문요청서는 개회일 3 일 전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의장은 현안질문요청서가 제출된 즉시 이를 중앙집행위원회에 전송하여야 한다.

제 41 조(중앙집행위원회에의 서류 제출 요구) ① 전한대회는 의결을 통하여 안건의 심의 또는 감사, 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문서 및 해당 집행기구가 보유한 사진·영상물(이하 서류등이라 한다)의 제출을 집행기구에 요구할 수 있다. 단, 특별위원회가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한대회 의결 또는 대의원 1/3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.

② 제 1 항의 서류등은 서면, 전자문서, 자기(磁氣)테이프, 자기(磁氣)디스크 또는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전한대회 회의의 회기 중이 아닐 때 대의원의 서류등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, 의장은 회장과 협의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.

④ 중앙집행위원회는 제 1 항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등을 요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⑤ 제 4 항 단서에 따른 기간 연장이 발생한 경우, 의장은 대의원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.

제 42 조(결산의 심의기한) 전한대회 회의는 결산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전한대회 회의의 폐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.

제 43 조(탄핵의 소추(訴追)) ① 탄핵의 소추(訴追)가 있을 경우, 의장은 소추된 후 처음 개최되는 전한대회 회의에 이를 보고하고, 전한대회는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전한대회 회의가 제 1 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에는, 지체 없이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.

제 44 조(탄핵 특별위원회) ① 제 43 조 제 1 항에 따라 탄핵안 조사를 명령 받은 특별위원회는 지체 없이 탄핵안을 조사하여 이를 전한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탄핵 특별위원회의 권한과 의무는 본 회칙의 감사위원회 조항을 준용한다. 단, 필요한 경우에는 회칙 해석위원회와 협의하여 권한과 의무를 조정한다.

③ 제 2 항에 따른 회칙해석위원회의 협의가 있을 경우, 회칙해석위원회는 이를 제 183 조에 따른 해석 내용으로써 기록하여야 한다.

제 45 조(탄핵안의 의결) 탄핵 특별위원회의 조사를 마친 탄핵소추안은 학생총회 또는 총투표를 통하여 의결되며, 본 세칙에서 밝히지 아니한 절차는 본 회칙을 따른다.

제 46 조(대의원의 사임) ① 대의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사임서를 제출하고, 전한대회 의결을 통하여 사임할 수 있다. 사임서 서식은 「사무처리세칙」을 따른다.

② 사임의 의결은 토론을 하지 아니한다.

③ 대의원이 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집행기구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의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.

④ 의장은 대의원이 사임한 때로부터 48 시간 이내에 대의원의 사임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.

제 47 조(자격심사) ① 대의원이 다른 대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3 인 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.

② 의장은 제 1 항에 따른 청구가 발생하였을 때, 의장 산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. 단, 해당 특별위원회는 피청구 대의원의 소속 대의원을 포함하여 3 명 이하로 구성한다.

③ 의장은 제 1 항에 따른 청구가 발생하였을 때, 청구서의 등본을 피청구 대의원에게 전달하여 일주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.

④ 제 3 항에 따른 답변서가 의장에게 제출된 경우,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위원회로 회부한다.

⑤ 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를 바탕으로 자격을 심사한다. 단,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서만으로 자격을 심사한다.

제 48 조(자격심사의 의결) ① 제 47 조 제 1 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에서 자격 심사 보고서가 제출된 경우, 의장은 해당 대의원의 자격 심사에 대한 안건을 전한대회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.

② 피청구 대의원은 전한대회 회의에서 스스로, 혹은 다른 대의원으로 하여금 항변할 수 있다.

③ 전한대회 회의는 피청구 대의원의 자격을 의결로 결정한다. 단, 해당 의결은 재적인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.

제 49 조(회의의 질서유지) ① 대의원이 전한대회 회의장에서 본 세칙 또는 다른 회칙·세칙·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, 의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다.

② 제 1 항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대의원이 있을 때에, 의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해당 대의원의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 조치할 수 있다.

③ 의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, 회의를 중지하거나 폐회를 선포할 수 있다.

제 50 조(모욕 등 발언의 금지) 대의원은 전한대회 회의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.

제 51 조(회의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) 대의원은 총회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지 아니한다.

제 52 조(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 금지) 대의원은 전한대회 회의장 의장석 또는 특별위원회의장 위원장석을 점거하지 아니한다.

제 53 조(회의장 출입 방해 금지) 누구든 대의원이 전한대회의 또는 특별위원회의에 출석하기 위하여 전한대회 회의장 또는 특별위원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.

제 54 조(방청의 허가)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.

②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우, 방청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 55 조(방청 금지) ① 흥기를 휴대한 자, 주기(酒氣)가 있는 자,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, 거동이 수상한 자의 방청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② 본 회의 회원이 참관하는 경우에도 제 1 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참관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 56 조(퇴장 명령) ①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령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방청인을 고발할 수 있다.

② 방청석이 소란할 경우,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.

제 57 조(특별위원회에 대한 특별조항) 본 세칙에서 언급한 특별위원회는, 별도의 수식 표현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"전국한 의과대학한 의학전문대학원대표자회의 산하 특별위원회"로 범주를 한정한다.

부칙 [본조신설 2022.06.27.]

1. 본 세칙은 2023 년 제 1 차 전한대회일부터 효력을 지닌다.